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731-6112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653호 2005. 9. 22.(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2005-1291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제2005-1305호 서울특별시강동도지구확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등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정정공고) 6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나 디스켓 또는 e-mail : sibo200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 관보, 시보, 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



제2005-1308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고 시

- 제2005- 2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 7
- 제2005- 280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및 신설 7
- 제2005- 281호 도시관리계획(은평구 구청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11
- 제2005- 282호 마포로1구역(제1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정정 12
- 제2005- 283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

◆공 고

- 제2005-12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3
- 제2005-126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13
- 제2005-12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14
- 제2005-1279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변경 14
- 제2005-128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15
- 제2005-128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등록말소) 16
- 제2005-1285호 2005년도 제12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과시생 모집 16
- 제2005-1287호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18
- 제2005-1288,1289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변경 18
- 제2005-1296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19
- 제2005-12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9
- 제2005-1298호 측량업 신규등록 21
- 제2005-1300호 습득물공고 21
- 제2005-130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21

◆구 고 시

- 제2005- 6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중구) 23
- 제2005- 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중구) 24
- 제2005- 62호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II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성동구) 27
- 제2005- 63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성동구) 27
- 제2005- 5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광진구) 27
- 제2005- 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광진구) 28
- 제2005- 59호 구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광진구) 28
- 제2005- 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동대문구) 29
- 제2005- 8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중랑구) 29
- 제2005- 79호 관리처분계획인가(성북구) 30
- 제2005- 5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봉구) 31
- 제2005- 63호 도시계획시설(녹번서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은평구) 32

제2005- 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평구)	39
제2005- 133,13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서대문구)	40
제2005- 59호	양천구 신월동 산호아파트 사업계획승인(양천구)	46
제2005- 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구로구)	46
제2005- 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지형도면 작성·승인(구로구)	46
제2005- 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구로구)	47
제2005- 75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구로구)	48
제2005- 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구로구)	49
제2005- 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금천구)	50
제2005- 58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영등포구)	50
제2005- 6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동작구)	51
제2005- 72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관악구)	54
제2005- 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서초구)	55
◆구공고		
제2005-667호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동대문구)	56
제2005-66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및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공람(동대문구)	60
제2005-5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강북구)	67
제2005-4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노원구)	69
제2005-5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은평구)	69
◆사업소공고		
제2005- 8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중랑소방서)	71
제2005- 1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양천소방서)	71
제2005- 47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송파소방서)	71
◆기 타		
제2005-147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
제2005-148호	하천점용(변경)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
제2005-176,177,178,179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

짜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91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방식을 일반경쟁입찰방식에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질 높은 수탁자 선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원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상향조정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문화시설과 공원시설의 연계이용시 입장료를 할인(30%~50% 범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등 조정안〉

공원입장료

(단위 : 원)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성 수 기 (4~6월 9~10월)	비 수 기 (7~8월 11~3월)	성 수 기 (3.16~10.31)	비 수 기 (11.1~3.15)	
야간이 대공원	입장료	어 른 1회	1,500	900	2,500	1,500	
		청소년 1회	1,000	500	1,500	1,000	
		어린이 1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서 울 대공원	동식물원 입 장 료	어 른 1회	3,000	1,500	5,000		
		청소년 1회	2,000	1,200	4,000		
		어린이 1회	1,000	700	2,500		

□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등

(단위 : 원)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종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종 별	사용기준	금 액	
공 통	운동장 (광장)사용	1회1㎡당	5	잔디운동장은 30분당 일반운동장은 4시간당	운동장 (잔 디)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일 반)	2시간 1㎡당 초과 1시간당 2시간 1㎡당 초과 1시간당 2시간 1㎡당 초과 1시간당	20 10 20 10 20 10	
	사진촬영 (상시영리행위)	1인 1년당	130,000		사진촬영 (상시영리행위)	1인 1년당	800,000	
					웨딩촬영 (영리행위)	1시간당 초과 1시간당	13,000 7,500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초과 1시간당	13,000 6,500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 목적 촬영에 한함	촬영 및 녹 화	1회당 4시간 초과 1시간당	360,000 90,000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성수기 (4~6월, 9~10월)	비수기 (7~8월, 11~3월)				
서 울 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어 른	1,500	1,000	1,500			
		청소년	1,000	800	1,000			
		어린이	500	300	500			
남 산 공 원	차량통행료	버스, 대형화물 승용, 15인승이하 승합차 이륜, 소형화물	1,500 1,000 500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 3,000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 2,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 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 무료				

2.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공원과장, 전화 : 3707-9612, FAX : 3707-962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우) 100-744, E-Mail : kumbawie@seou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05호
 서울특별시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등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정정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43호(2005.9.8)호로 공고한 「서울특별시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등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정정공고 내용

정 정 전	정 정 후
<폐지대상규칙> • 서울특별시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개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대상규칙> • 서울특별시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개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면목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2. 기타사항 변동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08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서울무역전시장'의 부지에 대한 산업자원부와의 무상대부기간 만료(2005.9.30)가 예정되고, 당해 부지에 건축되어 있는 가설시설

물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우리시의 중소기업지원시설로 관리·운영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산업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1동, 전화: 02)6321-4016, FAX: 02)3707-9369, E-mail: goodljh@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구로구 궁동 산18-21번지일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
 설: 학교)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 특별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
 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
 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로구 궁
 동 산18-21번지 일대에 대하여 과학고
 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학교	고등학교	구로구 궁동 산18-21번지 일대	-	중)31,029	31,029	-	과학고

나. 건축물의 범위

구분	시설명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범위	비고
신설	학교	구로구 궁동 산18-21번지 일대	60%이하	150%이하	5층이하(20m이하)	

다. 관계도면: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라.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
 시 시설계획과(전화 731-6747) 및 구
 로구 도시개발과(전화 860-2385)에 관
 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80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버스전용
 차로 폐지 및 신설

하정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설치와 관
 련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폐지 또는 신설함
 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및 동법시
 행령 제6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일반시민
 에게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을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 특별 시 장

가. 버스전용차로 폐지 고시

도로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km)	전용차로종류	폐지일	비고
일반도로	용두역(동대문구청역) → 신답철교	하정로(시외방향)	0.26	가로변버스전용차로	고시일로부터	

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

도로구분	구 간	가 로 명	연장(km)	전용차로종류	기 간	통행시간
일반도로	용두역(동대문구청역)→신답철교	하정로(시외방향)	0.26	중앙버스전용차로	2005.9.30부터	24시간 전일제

다.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2005년 9월 현재)

전 일 제(가로변버스전용차로)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km)	운영개시
한 강 로	서울역~한강대교	4.0	93.2
왕 산 로	동대문R~청량리R	3.3	93.2
동 작 대 로	이수교~과천시계	4.8	93.2
의 주 로	녹번역3~서대문R	4.8	93.8
신 촌 로	신촌R~아현고가	2.0	93.8
공 향 로	발산역4~양화교	3.9	93.8
현 충 로	한강대교남단~이수교	2.5	93.8
신 반 포 로	이수교차로~논현역4	3.6	
노 량 진 로	대방역3~한강대교남단	3.1	
종 로	세종로4~동대문R	2.8	94.5
새 문 안 길	서대문R~세종로4	1.1	
퇴 계 로	서울역R~광희동4	3.2	94.5
성 산 로	성산1교~사천고가	1.5	94.5
시 흥 대 로	대림3~안양시계	6.8	94.5
한 남 로	한남5→한남초교	0.6	94.5
노 량 진 로	영등포R~대방역3	1.1	94.8
망 우 로	청량리R→시조사3	1.1	94.8
	망우역4~구리시계	2.1	94.8
대 방 로	대방역3~대림3	3.0	94.8
강 남 대 로	영동1교남단~염곡4	1.0	94.12
양 화 로	합정R~신촌R	2.6	94.12
남 대 문 로	광교R~서울역R	2.0	95.4
사 평 로	강남성모병원3~반포IC	1.3	95.4
양 평 로	양평동4~영등포전화국4	1.5	95.4
압 구 정 로	한양APT4~한남대교남단	2.5	95.4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km)	운영개시
남 부 순 환 로	시흥IC~까치고개	7.3	95.4
화 곡 로	강서구청입구4~화곡역4	1.9	95.5
은 평 로	서부세무서~녹번역3	0.7	95.5
울 립 픽 로	삼성4~잠실역4	3.3	95.5
송 파 대 로	잠실역4~성남시계	6.3	96.8
대 학 로	이화R→혜화R	1.5	96.8
	종로4가→이화R	0.6	03.7
마 포 로	마포대교북단~아현3	3.7	97.2
하 정 로	동천교4~신답철교	0.9	03.7
창 경 궁 로	종로4가→혜화R	0.5	03.7
소 계	31개구간	92.9	-
시 간 제(가로변버스전용차로)			
왕 십 리 길	한양공고앞4~성동교북단	3.4	93.8
경 인 로	교통안전공단입구3~부천시계	1.5	94.5
용 호 로	원효대교남단~여의교	1.0	94.8(00.2 시간제 변경)
현 룡 로	염곡4~내곡IC	2.9	95.4(00.2 시간제 변경)
고 산 자 로	고산자교남단~왕십리R	1.2	95.4(00.2 시간제 변경)
등 촌 로	등촌3~재물포길	2.3	95.4(00.2 시간제 변경)
월 계 로	월계초교입구~을지병원4	2.0	95.4(98.9 시간제 변경)
영 등 포 로	영등포R~오목교	2.5	95.5
영 동 대 로	영동대교남단~삼성역4	2.0	95.5(00.2 시간제 변경)
	삼성역4~학여울역4	1.5	96.8(00.2 시간제 변경)
화 곡 로	화곡역4~양원초교앞	1.5	96.8(03.2 시간제 변경)
원 효 로	원효대교북단~남영역	2.7	96.8(00.2 시간제 변경)
만 리 재 길	서부역~공덕R	2.0	96.8(03.2 시간제 변경)
동 일 로	수락파출소~망우로	10.2	96.8(98.9 시간제 변경)
통 일 로	녹번역3~구파발역3	4.6	96.8(00.2 시간제 변경)
남 부 순 환 로	양재역4~학여울역4	3.7	96.8(00.2 시간제 변경)
봉 은 사 로	삼릉공원4~코엑스4	1.6	96.8(00.2 시간제 변경)
효 령 로	지하철공사앞3~서초3동4	2.5	96.8(98.2 시간제 변경)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km)	운영개시
공 항 로	발산역4~공항입구	2.8	96.8(00.2 시간제 변경)
강 서 로	발산역4~화곡역4	2.1	96.8(98.9 시간제 변경)
천 호 대 로	천호4~방아다리4	2.7	98.2(00.2 구간축소)
둔 촌 로	길동4~둔촌4	1.4	98.2
도 산 대 로	신사역4~영동대교남단	3.2	98.2
관 약 로	봉천4~송실대3	2.0	98.2
중 압 로	중암경찰서~고대입구3	1.3	99.12
풍 납 로	천호4~송과구청4	3.0	99.12
소 계	25개구간	67.6	-
24시간 전일제(중앙버스전용차로)			
천 호 대 로	신답R~아차산역남측3	4.5	96.2
	신답철교~신답R	1.4	03.7
하 정 로	신설동R→신답철교	1.7	03.7
	용두역(동대문구청역)→신답철교	0.3	05.9
삼 일 로	퇴계로2가~종로2가	1.0	04.5
도 봉 로	의정부시계~미아4	10.0	04.7
미 아 로	미아4~혜화R	4.0	04.7
창 경 궁 로	혜화R→월남4	1.3	04.7
강 남 대 로	신사역4~영동대교남단	4.8	04.7
수 색 로	고양시계~사천교	3.9	04.7
성 산 로	사천교~이대후문	2.9	04.7
경 인 로	영등포R~오류IC	4.4	05.7
망 우 로	망우역4→청량리R	4.9	04.7
	시조사3→망우역4	3.3	05.7
소 계	11개구간	45.1	-
기타 구간(중앙버스전용차로)			
경 부 고 속 도 로	양재IC~서초IC	2.6	04.7
소 계	1개구간	2.6	-
※ 경부고속도로 양재IC~서초IC 구간은 고 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방법과 동일함 - 운영시간		◦ 토요일 : 12시~21시 ◦ 일요일, 공휴일 : 서울방향 08시~23 시, 부산방향 08시~21시	

◦ 설날, 추석연휴(일요일, 국경일이 어지는 경우 포함) : 연휴전날 12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24시까지
- 통행가능차량

◦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마. 전체 구간

총 계	68개구간	208.2km	-
-----	-------	---------	---

바. 임시폐지 구간

연번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6	공 항 로	등촌3~양화교	1.3	지하철9호선 공사완료시까지 (2007년 예정)
7	신 반 포 로	이수교차로~고속터미널4	1.6	
14	노 량 진 로	동작전화국입구3~상도터널입구	1.9	
20	사 평 로	강남성모병원3~반포IC	1.3	
21	양 평 로	양평동4~당산중교4	0.8	
소 계		5개구간	6.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담당관 간선도로팀 3707-9815(담당자 정도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된 은평구 구청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차량출입금지구간에 주차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81호
도시관리계획(은평구 구청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1998-68호(1998. 3.20)로 결정(중전 도시설계확정시행공고)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
가. 변경결정 조서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응암동 84-8~84-9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내 주차출입구(1개소) 추가	

나. 변경결정 사유
◦ 응암동 84-8와 84-9는 공동건축(권장)토록 계획되었으나 공동건축 이행되지 아니함.
◦ 응암동 84-8호 단독으로 건축계획(녹번지구대)이 수립됨에 따라 응암동

84-9(현재건물존치) 토지에 차량출입이 불가하여 주차출입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별첨(생략)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299) 및 은평구 도시정비과(☎ 350-1385~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82호
마포로1구역(제1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36호(2005.8.4)로 고시된 마포로1구역(제1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과 관련된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정비사업의명칭 :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건축시설계획

정정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연면적	30,290.15㎡	30,290.1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83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단위 : 천원)

연번	회 계 별	예 산 액
1	○ 일반회계	11,700,670,846
2	○ 기타특별회계	4,148,489,402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02,500,000
	- 교통사업특별회계	879,066,148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9,419,897
	- 주택사업특별회계	480,200,000
	- 도시개발특별회계	762,700,000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6,900,000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43,700,000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027,825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3,975,532
3	○ 공기업특별회계	844,700,000
	- 수도사업특별회계	844,700,000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699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구 도선동 14 신한넥스텔 401호	최용기	2005.8.9	• 자립생활홍보와 이념교육 및 지원 • 동료상담서비스 등
700	나눔의 등지	은평구 대조동 87-75	권주웅	2005.8.22	• 무료급식소 운영
701	실천연대	강남구 도곡2동 467-19 현대비전B/D 615호	정동희	2005.8.25	• 지역경제정의실천 및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제 불이익 배제 • 건강한 투자자의 권리를 찾는 운동
702	(사)범예의생활실천운동서울특별시본부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유림회관 2층)	변은섭	2005.8.29	• 시민예의생활실천운동의 교육 및 전개 • 인성 등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전개 등
703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32 태성빌딩 305호	나경택	2005.8.29	• 사회봉사활동 및 친절표창 등
704	평화통일이북7도연합회	용산구 한강로 3가 63-10(해룡빌딩 2층)	송병준	2005.8.30	• 지역사회 불우이웃돕기 운동 • 고향 및 새터민 정나누기 운동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02-731-6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6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등록 번호	단체명칭	구 분	변 경 사 항		변경등록 일 자
			당 초	변 경	
25	한국신장장애인서울협회	소재지	종로구 인의동 112-1, 동원빌딩 7층	중구 신당4동 335-2, 2층	2005.8.17
433	NGO한국기업장애인협회	소재지	마포구 공덕2동 385-233	마포구 상수동 351-3호 2층	2005.8.10
512	영등포구 바른선거름 위한 시민모임	대표자	이 상 진	조 창 숙	2005.8.11
		소재지	영등포구 도림1동 1-33	영등포구 신길1동 95-101	
525	한강지킴이문화 공동체	소재지	종로구 신문로 2가 1-355	중구 정동 1-54	2005. 9.1
632	사단법인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소재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203호	금천구 가산동 481-11 대륭테크노타운8차 1101호	2005.8.8
656	성매매없는세상이룸	대표자	이 현 옥	김 복 자	2005.8.9
		소재지	관악구 신림동 468-9(2층)	동대문구 신설동 92-79 (301호)	
666	로이사랑나눔회	대표자	강 경 국	임 영 훈	2005.8.26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민협력과(☎ 02-731-6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73호(2001.5.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한 『용비교~뚝섬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에 의하여 완료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1-2~성수동 1가 68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2) 명 칭 : 용비교~뚝섬길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 16.7~40m, 연

장 1,00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01.12.19 ~ 2005.6.30

바. 공사준공도서 : 따로붙임(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79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업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등록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607호	(주)더존넷 인터내셔널	정민예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1 동아빌리트 1타운 지하1층 ○ 전화번호 : 6677-0141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7-45 대흥빌딩 5층 ○ 전화번호 : 3452-4607

나. 수리일자 : 2005년 9월 13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
보호과(☎ 02-3707-9336)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8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사업자등록
자 폐업)를 위반한 다음의 건설업자에 대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
라 건설업자 등록말소등을 위한 청문통지
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자 등록말소등					
2. 당사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메인이엔씨(주)	서정호	건축011539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35-15(나라빌딩 6층)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 3회이상 체납(삼성세무서 8건112,802,04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자 등록말소등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설행정과	담당자	이동욱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번호	3707-9646/7
	일 시	2005년 9월 29일 10시까지				
	장 소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사무실(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성 명	박 노 숙				

★ 참석자 지침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기타 이견 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8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국가기관(국세청)에 의하여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등록말소)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1. 귀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신고 및 시정 명령 불이행 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건설업등록 말소)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대상 및 내역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남광개발(주) 정호성	건축공사업 01064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3-3	국세청 폐업사실확인 (사업자번호2208166963)	건설업 등록 말소 (2005.9.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02) 3707-9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85호

2005년도 제12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과시생 모집(朝鮮時代 科擧制 再現行事 科試生 募集)

서울특별시에서는 전통문화 복원·계승사업의 하나로 1994년부터 한시 백일장 형태

로 시행하고 있는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행사』에 참가할 과시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1. 행사일시 : 2005.10.2(일) 10:00~17:00.
2. 장 소 : 경복궁 근정전 일원
3. 응시인원 : 선착순 250명
4. 신청자격 : 제한 없음(전국)
※ 단 1~11회까지 장원급제자는 제외
5. 시험내용 : 漢詩(七言律詩)
6. 詩 題(추후 통보)
※ 韻統 및 韻字 : 행사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 應試生 準備物 : 필, 묵, 유건도복, 신분증(필히 지참), 玉篇지참 가능
7. 시상 : 총 33명
○ 갑과 3명(장원 1명 300만원, 방안 1명 200만원, 탐화 1명 100만원)
○ 을과 7명 각 50만원
○ 병과 23명 각 10만원
※ 급제작 33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저작권은 서울

시에 있음

8. 접수기간 : 2005.9.13~9.23(11일간)
※ 신청기간 중 응시인원 접수 초과시 해당일 접수분까지만 인정
9.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10. 신청서식 : 별첨
11. 접 수 처
○ 직접방문 : 서울시청 별관 1동 11층 문화재과(조선시대 과거제재현 담당)
○ 우 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문화재과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744, 전화번호 : 02)3707~9435, 9436)
※ 우편 제출시는 반드시 등기우편(분실방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선착순 접수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 인터넷 : <http://www.seoul.go.kr>
(상단메뉴 “문화관광-공지사향”)에서 접수
- 접수처 안내 : 02)3707-9435, 9436
12. 기타
○ 과거시험장에는 휴대폰을 지참할 수 없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응시 신청서

성 명	한글)	본 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 택 : • 사 무 실 : • 휴 대 폰 : • E-mail : 		
소속사회			

2005. 9.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87호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
 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

을 위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 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업체명	주소			
(주)종합건축 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대표:김진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8-32	업무정지 6개월 (’05.10.15~ '06.4.14)	경상북도 포항시가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는 “포항 시 신청사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원 현황통보 문서를 임의 위조(감리원 교체사유)하여 한국건설감리 협회에 통보하고, 감리원 교체가 위조된 내용으로 발 급된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를 '05.3.30.부터 '05.4. 24까지 광주광역시 등 발주기관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안서로 제출 사용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10의2,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17)10의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88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
 가. 등록변경사항

업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
 하고, 같은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신 고 인			변 경 내 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606호	(주)하이넷 생활건강	김명철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4-48 상경빌딩 4층 ○ 전화번호 : 569-8004	○ 소재지 : 서울시 역삼동 837-12 서우빌딩 5층 ○ 전화번호 : 2179-7000

나. 수리일자 : 2005년 9월 14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
 보호과(☎ 02-3707-9336)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89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
 업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
 하고, 같은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등록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621호	쿠모(주)	장광옥	○ 상 호 : (주)쿠모	○ 상 호 : 쿠모(주)

나. 수리일자 : 2005년 9월 14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 보호과(☎ 02-3707-9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96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직권 등록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대 상 업 체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처분내용 (처분일)
상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 암스트롱유엔아이 (575)	이수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9-4호 서원빌딩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거래)계약해지(중지)후 재계약 미이행 등 실질적으로 영업불기(05.7.14 특수판매공제조합 공장거래계약 해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등록취소 (05.9.14)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 보호과(☎ 3707-9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건설부고시 제177호(1962.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성북구고시 제2005-48호(2005.6.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계획 개요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내부순환로(정릉동) 구조개선공사
 2) 사업시행구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9-1일대 (국민대 앞~북악터널 앞)
 3) 사업의 규모
 가) 진출램프 설치 : B=1차로, L=383m
 U-Turn 지하차도 설치 : B=1차로, L=150m
 하부도로 개량 : L=645m
 나) 부대공 1식

-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건설안전본부장)
- 5) 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별항
-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항

- 8)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건설 2부(☎ 3708-2456~7)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내부순환로(정릉동) 구조개선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1	성북구 정릉동	869-1	전	476	399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A 51-1205	정 재 훈			
2	"	868-1	전	479	181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A 51-1205	정 재 훈			
3	"	861-5	대	542	364	성북구 정릉동 861-1	학교법인국민학원			
4	"	863-3	도	184	97	성북구 정릉동 861-1	학교법인국민학원			
5	"	958-2	답	195	57	성북구 정릉동 861-1	학교법인국민학원			
6	"	957-7	대	30	15	도봉구 방학동 271-1 신동아A 21동 907호	김성철 외 3인			
7	"	산1-282	임	227	18	국	산 립 청			
8	"	958-1	도	192	192	성북구 정릉동 861-1	학교법인국민학원			
9	"	산1-214	임	4,378	4	성북구 정릉동 861-1	학교법인국민학원			
10	"	산1-280	임	2,597	204	국	산 립 청			
11	"	961-2	대	30	30	성북구 정릉동 산98	이승용 외 6인			
12	"	산1-1	임	3,766,507	447	국	산 립 청			
13	"	산87-1	임	753,082	2,509	국	산 립 청			
계				4,528,919	4,51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298호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측량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 록 일
일반측량업 02-01-2015	씨엔에스	황형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3 주공④ 1425동 1002호 (☎ 02-934-0777)	2005.9.16.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02-3707-805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00호
 습득물공고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에서 다음과 같
 은 습득물을 보관하고 있으니 물건을 제공
 하신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습 득	일 시	2005. 9. 13. 13:00 경		
	장 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길 197 강서소방서 내		
물 품	품 명	수 량	금 액	형상, 모양, 색채, 품질, 특징등
	현 금	1매	10,000원	가재비용없음
	음료수	1박스	5,000상당	광동비타500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0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02호(2005.7.
 1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세
 부시설조성계획)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
 구 반포동 505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학
 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른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시청 건축과(☎ 3707-
 8255), 시설계획과(☎ 731-6347) 및 서
 초구청 도시정비과(☎ 570-6386)에 비치
 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열람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외 1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2) 규모 : 새병원 신축
 (2) 명칭 : 가톨릭중앙의료원 새병원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11,614.4㎡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면적	11,177.89㎡	
연면적	174,081.64㎡	
건축규모	지하6층, 지상20층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반포로변 완화차로 - 폭 : 3.0m - 길이 : 372.0m - 면적 : 1,005.5㎡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완화차로) 비용은 사업주가 자체조달하고 조성이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사평로변 완화차로 - 폭 : 3.0m - 길이 : 207.5m - 면적 : 636.0㎡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정진석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1) 사업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08. 1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등 명세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 유 자
1	서초구 반포동 산45-12	임야	2.0	서울특별시
2	서초구 반포동 525-2	도로	43.0	서울특별시
3	서초구 반포동 525-8	도로	19.0	서울특별시

사. 열람기간 : 2005. 9. ~ 2005. 10.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아. 열람장소 : 서울시청 건축과(☎ 3707-8255), 시설계획과(☎ 731-6347) 및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570-6386)
 자.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05-6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70호(2005.9.8)
 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변
 경결정 고시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
 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중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남산주변	최고고도 지 구	중구 회현동1·2가, 예장 동, 남산동2·3가, 필동 2·3가, 장충동2가, 신당 동 일대	3층이하, 건축물과 대 지가 접하는 최저점으 로부터 12m 이하	1,014,112 (477,190)	'95.4.6 (서울특별시고시 제93호)	면적중 팔호 안의 면적은 중구 해당면적임
변경	남산주변	최고고도 지 구		3층12m 이하 (완화시 4층16m)	1,014,112 (477,190)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기정	남산주변	최고고도 지 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 2·3가, 남산동1·2가, 주 자동, 남학동, 목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5층이하, 건축물과 대 지가 접하는 최저점으 로부터 18m 이하	1,434,427 (616,861)	'95.4.6 (서울특별시고시 제93호)	
변경	남산주변	최고고도 지 구		5층20m 이하 (완화시 7층28m)	1,434,427 (616,861)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2. 관계도면 및 완화시 기준: 생략(당초 결
정된 최고고도지구 지정면적의 증감이 없
는 고도제한 변경사항으로서 중구청 도시
관리과 및 지적과에서 비치도면과 같음)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 2260-1904) 및
 지적과(☎ 2260-1497)에 관련도서를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 중구고시 제2005-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5-35호(2005. 6.16) 및 2005-56호(2005.9.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아래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교동안전회관~성동구 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 	중구 신당동 160-5~85-427간	폭 25m 연장 400m	2001.5.21~ 2005.12.15	소유권 및 물건변동(영업권 및 기타 토지, 물건변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신당5동 85-551~85-537간 도로개설공사 	중구 신당5동 85-551~85-537간	폭 6m 연장 41m	2005.9.8~ 2006.12.31	소유권 변동 (토지 및 물건변동 없음)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 2260-4037) 및 건설관리과(☎ 2260-4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토 지 조 서

사 업 명 : 교통안전회관~성동구 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비고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중구 신당동 85-263호	대	90	최강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19-21 백합오피스텔 504				
2									중구 신당동 85-505호	대	40	최강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19-21 백합오피스텔 504				
3									중구 신당동 85-260호	대	16	홍명희	중구 신당동 85-247			지분 16/351	

사 업 명 : 신당5동 85-551~85-537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비고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신당5동 85-768	대	37	박상술	중구 신당동 55-22				신당5동 85-768	대	37	서울특별시					

제 2653 호

시

단

2005. 9. 22. (목)

변경물건조서

사업명 : 교통안전회관~성동구 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비 고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용할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용할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중구 신당동 85-263, 505호	건 물 보일러 정화조	화장실 포함 기름	2 1식 1식	최진환	중구 신당동 85-263	한국 주택 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행신지점)	근저당권	중구 신당동 85-263, 18,27, 508호	건 물 보일러 가스설비 수 도 계량기 전 기 계량기	블록조 /기와 도시가스	98 1식 1식 1식 2식	최강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19-21 백함오피스텔 504				1층
				박이묵			동대문구 전농동 6 전농1차 우성A 10-1403	근저당권											
2										중구 신당동 85-247, 260호	건 물 보일러 가스설비 수 도 계량기 전 기 계량기 정화조	블록조 /기와 도시가스	74 2식 2식 1식 1식 1식	홍명희	중구 신당동 85-247				1층

제 2653 호

시

단

2005. 9. 22. (목)

◆ 성동구고시 제2005-62호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Ⅱ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32(2005.8.4)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 계획 결정된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 관련도면은 성동구청 주택과(☎ 2286-5595) 및 도시관리과(☎ 2286-5578)에 서류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 성동구고시 제2005-63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주택법 제16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 고시내용

- 1. 사업의 명칭 : 민영주택건설사업
-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K·T 대표 남중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 3.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33-1호 외 7필지
 - 대지면적 : 25,824㎡
 - 연 면 적 : 96,113.72㎡

-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18~29층 5개동 4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업시행기간 : 2005.9.~2008.7.
- 5. 주택법 제17조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등
- 6. 승인내용 및 기타관련도서는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38~40)에 비치함.

◆ 광진구고시 제2005-5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광진 공고 제2005-375(2005.8.18)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 공고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제2생명과학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건축행정과(☎ 450-1390)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광 진 구 청 장

- 1.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3. 사업규모
 - 가. 사업대지면적 : 460,443.20㎡
 - 나. 사업 연면적 : 319,190.52㎡
 - 다. 사업변경 내용
 - 1)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제2생명과학관) 증축공사
 - 지하3층/지상5층 1개동, 증축면적 : 13,397.60㎡

라. 주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시 행 자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나.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

◆ 광진구고시 제2005-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
 인가

- 광진 공고 제2005-376(2005.8.18)로 도
 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
 가 열람 공고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
 대 건국대학교 기숙사(제1회설계변경) 증
 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
 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
 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건축행정과(☎ 450-
 1390)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광진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
 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3. 사업규모
 가. 사업대지면적 : 460,443.20㎡
 나. 사 업 연면적 : 319,190.52㎡
 다. 사업변경 내용(제1회설계변경)
 1) 건국대학교 기숙사증축공사
 - A동 지상12층/지하1층 연면적
 (10,855.38㎡)
 - B동 지상12층/지하0층 연면적
 (8,714.40㎡)
 - C동 지상12층/지하1층 연면적

(17,418.88㎡)

라. 주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시 행 자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나.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
 지 일대

◆ 광진구고시 제2005-59호

구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2호('02.5.8)
 로 결정고시된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용 중 구의동 246-14호 토지에 접한 보차
 혼용통로 변경(6m → 5.6m) 및 건축한계
 선(3m → 2.6m)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
 항제6호, 제8호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부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
 당되어 동법률 제30조, 동법률시행령 제
 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
 며 아울러 지형도면 고시는 동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
 시하지 아니함)에 의거 동 고시로 갈음합
 니다.

2005년 9월 22일
 광진구청장

1. 변경결정 취지
 - 구의동 246-14호 토지의 건축물 계획
 에 부합되게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2.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구 분	위 치	세 부 내 용		비 고
		보차혼용통로	건축한계선	
기 정	구의동 246-14	6.0m	3.0m	보차혼용통로, 건축한계선 0.4m씩 변경(축소)
변 경	구의동 246-14	5.6m	2.6m	

- 3.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생략
(광진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
-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개발과(☎ 450-1385) 및 지적과(☎ 450-1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률시행령 제 25조,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동 대 문 구 청 장

◆ 동대문구고시 제2005-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이문5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고시 건 고시제66호(1995.3.10)로 결정된 이문동 321-100~이문동 319-82호간 도시계획시

1. 변경결정 사유

- 이문5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고시 건 고시제66호(1995.3.10)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의 폭원이 불규칙하여 불합리한 도로선형을 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폭원(m)							
기정	소로	3	6	국치도로	176	이문동 321-100	이문동 319-82	일반도로	1995.3.10	
변경	소로	3	6	국치도로	176	이문동 321-100	이문동 319-82	일반도로		일부도로 폭 조정

※ 도로의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4.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2127-4584) 및 기획재정국 지적과(☎ 2127-449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중랑구고시 제2005-8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중 랑 구 청 장

1. 사업명 : 목동 유한한양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중랑구 목동 240-158호 유한한양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안동준, 송금남
 - 나.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7 이앤씨건설(주) 대표 박찬성
3. 사업시행위치 및 개요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236-1외 34필지
 - 나. 대지면적 : 5,925.50㎡
 - 다. 연면적 : 19,047.44㎡
 - 라. 규모 : 지하1층 지상6~12층 아파트 3개동 1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03년 9월~2006년 3월
5. 변경승인내역
 -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변경 : 동구종합주택건설(주) → 이앤씨건설(주)
6.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사항
 - 건축법제8조에 의한 허가
7. 사업계획승인 관련도서 : 생략(중랑구청 주택과 비치)

◆ 성북구고시 제2005-79호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3호(2001.2.10) 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인가 제2002-08-24호(2002.6.14)로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1호(2004.2.20)로 구역지정변경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4-102호(2004.8.10)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정릉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개발사업 / 정릉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52번지 일대
면적 : 38,936.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 정릉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이택민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86-6 태우빌딩 4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5년 9월 13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고
계	38,936	19		522	7,819.65	
소 계	30,751	19		522	7,223.31	
	분 양	30,751	19	지하3층~지상10층	7,223.31	
	임 대					
생활편익시설	1,048		지하1층~지상3층		596.34	

나.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구분	용도폐지		신설			
	계	도로	계	도로	공원	공공공지
규모(㎡)	3,827	3,827	5,610	1,025	4,349	236

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생활편익시설	비고
	계	59.98	84.97	114.78		
계	522	222	200	100	2,249.84	
조합원	211	11	140	60		
보류시설	2	2				
일반분양	309	209	60	40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920-36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봉구고시 제2005-5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6호(2005.8.25)로 결정되고, 도봉구고시 제2005-51호(2005.9.8)로 지형도면 승인된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일대(국군 창동병원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2

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3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1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도 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및 동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변경결정

나. 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위치	면적(㎡)	용도지역		비고
			기정	변경후	
변경	도봉동 626일대	51,658.6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증감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	도봉동 626일대	50,412.6	0	50,412.6	'05.8.25	복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 건축물의 범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90m이하

※ 변경내역 : 도면작업 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정정(별첨 지형도 및 지적도)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고시는 본 결정고시로 같음합니다.

바.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2289-1803), 지적과(☎ 2289-145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은평구고시 제2005-63호

도시계획시설(녹번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1. 건고 제 35호(1983.1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53호(1992.7.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녹번서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녹번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0-13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녹번서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5-1호 일대

다. 면 적 : 29,945㎡

라. 도시계획시설(녹번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별첨

마. 도시계획시설(녹번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도면 : 게재생략

※ 은평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따로붙임 : 1. 도시계획시설(녹번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부.
2. 도로조서 1부.

도시계획시설(녹번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은평구 녹번동 85-1호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동)	바다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다면적(㎡)	연면적(㎡)		
총 계	29,945	10,888.25	1	2,951.56	8,123.27		29,945	11,721	1	2,951.56	8,123.27	14종 60기	시설면적 832.75㎡ 증
기 반 시 설	소 계	6,046	2,704.25				4,976	2,009				1종 9기	695.25㎡ 감
	도 로	4,871	1,529.25 (3,299)				4,871	1,904 (3,299)					374.75㎡ 증
	광 장	1,175	1,175				105.0	105.0				1종 9기	1,070㎡ 감
조 경 시 설	647	647					1,870.0	1,870.0					1,223㎡ 증
휴 양 시 설							660.0	660.0				6종 20기	660㎡ 증
유 희 시 설	790	790										1종 1기	790㎡ 감
운 동 시 설	220	220					685.0	685.0				8종 30기	465㎡ 증
교 양 시 설	5,307	5,307	1	2,951.56	8,123.27		5,307.0	5,307.0	1	2,951.56	8,123.27		
편 익 시 설	1,220	1,220 (1,734)					1,190 (1,734)	1,190 (1,734)					30㎡ 감
관 리 시 설		(207)	(1)	(125)	(125)			(207)	(1)	(125)	(125)		
녹지 및 기타	15,715						15,257						458㎡ 감
공원 시설율 (법정 40%)	10,888㎡/29,945㎡ = 36.36%						11,721.00㎡/29,945㎡ = 39.14%						
공원 건폐율 (법정 20%)	2,951㎡/29,945㎡ = 9.85%						2,951.56㎡/29,945㎡ = 9.85%						

제 2653 호

시

포

2005. 9. 22. (목)

나. 시설조서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9,945	10,888.25		1동	2,951.56	8,123.27				29,945	11,721		1동	2,951.56	8,123.27	14종 60기	시설면적 832.75㎡증	
기반 시설	소 계	소 계	6,046	2,704.25								4,976	2,009						695.25㎡감	
	도 로		4,871	1,529.25 (3,299)								4,871	1,904 (3,299)						374.75㎡증	
	광 장	소 계	1,175	1,175								105	105					19기	1,070㎡감	
	광 장(1)	2-1	85-1대	648	648															648㎡감
	부진입부(1)	2-2	100-84입	50	50					2-1	100-84입	35	35						1종3기	15㎡감
	부진입부(2)	2-3	100-100입	57	57					2-2	100-92입	30	30						1종3기	27㎡감
	부진입부(3)	2-4	100-83입	84	84					2-3	100-85입	40	40						1종3기	44㎡감
	휴게광장(1)	3-1	100-10입	86	86							-	-							86㎡감
	휴게광장(2)	3-2	100-92입	250	250							-	-							250㎡감
조경 시설	소 계		647	647							1,870.0	1,870.0							1,223㎡증	
	녹지법면		100-100입	523	523						85-4공	600	600						77㎡ 증	
	잔 디 발		100-100입	124	124						85-4공	70	70						54㎡ 감	
	자연학습장		85-1대								85-1대	1,200	1,200						1200㎡증	
휴양 시설	소 계										660	660						6종20기	660㎡증	
	주민휴게소-1									3-1	100-84	120	120						3종6기	120㎡증
	주민휴게소-2									3-2	100-85	540	540						3종14기	540㎡증

제 2653 호

시

포

2005. 9. 22. (목)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 시설	소 계			790	790							-	(90)					1종1기	790㎡갑 (휴게소내)	
	어린이놀이터	5	100-85입	790	790							-	(90)					1종1기	790㎡갑	
운동 시설	소 계			220	220							685	685					6종30기	465㎡중	
	체력단련시설	6	100-85입	90	90							-	-						90㎡갑	
	씨름장	7	100-83입	130	130							-	-						130㎡갑	
	운동시설(1)									4-1	100-85입	220	220					4종7기	220㎡중	
	운동시설(2)									4-2	100-83입	160	160					2종7기	160㎡중	
	운동시설(3)									4-3	100-83입	150	150					3종5기	150㎡중	
	운동시설(4)									4-4	85-4공	50	50					3종4기	50㎡중	
	운동시설(5)									4-5	85-4공	45	45					2종2기	45㎡중	
운동시설(6)									4-6	85-4공	60	60					3종5기	60㎡중		
교양 시설	소 계			5,307	5,307		1동	2,951.56	8,123.27			5,307	5,307		1동	2,951.56	8,123.27			
	문화 예술 회관	1	100-100일대	4,452	4,452	철근 Con'c	1동 지상2층 지하2층	2,951.56	8,123.27		1	85-4 공	4,452	4,452	철근 Con'c	1동 지상2층 지하2층	2,951.56	8,123.27		
	야외 무대	4	100-100입	855	855							85-4 공	855	855						
편익 시설	소 계			1,220	1,220 (1,734)							1,190	1,190 (1,734)						30㎡갑 95대	
	주차장		100-100입		(1,734)							85-4 공		(1,734)					59대	
	주차장	9	100-100입	1,190	1,190							85-4 공	1,190	1,190					36대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 시설	주차장(1)		85-4공	710	710						6-1	85-4공	710	710					(28대)	
	주차장(2)		85-4공	480	480						6-2	85-4공	480	480					(8대)	
	약수터	8	100-100입	30	30								-	-					30㎡감	
관리 시설	소 계				(207)			(125)	(125)				(207)			(125)	(125)			
	관리사무실		전 지역		(125)			(125)	(125)			85-4 공	(125)			(125)	(125)			
	휴지통		전 지역		(14)		14기				전 지역		(14)			14기				
	안내판		전 지역		(5)		5기				전 지역		(5)			5기				
	공원 등		전 지역		(63)		63등				전 지역		(63)			63등				
녹지 및 기타	소 계			15,715								15,257						458㎡ 감		
	녹 지		전 지역	15,715							전 지역	15,257						458㎡ 감		

제 2653 호

시

본

2005. 9. 22. (목)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중 점
당초					837.5	1,529.25			
변경				계	877.9	1904.0			증 374.75㎡
당초			1	2.5	96.0	240.0	시설간연결로	야외무대 후면부	85-3도 분기점
변경			1	2.0	52.0	104.0	산책로	산책4-2 분기점	생활과학문화관 후면부
당초			2	1.5	100.0	150.0	산책로	산책4-1 분기점	산책4-1 분기점
변경			2	2.0	67.0	134.0	진입로	산책4-1 분기점	100-6임 분기점
당초			3	2.0	40.0	80.0	진입로	산책4-1 분기점	산책4-4 분기점
변경			3	2.0	92.0	184.0	산책로	생활과학문화관 후면부	산책4-2 분기점
당초			4	2.0	20.0	40.0	산책로	산책4-25 종점	소나무동산(1)
변경			4	2.5	26.0	65.0	시설간연결로	생활과학문화관 후면부	문화예술회관 후면출구계단
당초			5	2.0	106.0	212.0	시설간연결로	부진입부(1)	85-3도 분기점
변경			5	2.0	68.5	137.0	시설간연결로	주민휴게시설(1)	주민휴게시설(2)
당초			6	1.0	42.0	42.0	산책로	산책4-5 분기점	어린이놀이터
변경			6	2.0	54.5	109.0	시설간연결로	주민휴게시설(2)	주민휴게시설(2)
당초			7	2.0	75.0	150.0	진입로	부진입부(2)	산책4-5 분기점
변경			7	3.0	24.5	73.5	진입로	부진입부(2)	주민운동시설(3)
당초			8	1.0	78.0	78.0	순환산책로	부진입부(1)	산책4-7 분기점
변경			8	2.0	77.0	154.0	시설간연결로	주민운동시설(3)	주민휴게시설(1)
당초			9	1.0	34.0	34.0	순환산책로	부진입부(2)	부진입부(3)
변경			9	2.0	55.0	110.0	시설간연결로	주민휴게시설(2)	주민운동시설(3)
당초			10	2.0	48.0	96.0	진입로	부진입부(3)	산책4-7 분기점
변경			10	3.0	27.0	81.0	진입로	부진입부(3)	주민휴게시설(2)
당초			11	1.0	15.0	15.0	산책로	산책4-10 분기점	어린이놀이터
폐지			11	1.0	15.0	15.0	산책로	산책4-10 분기점	어린이놀이터
당초			12	2.0	4.0	8.0	시설간연결로	산책4-10 분기점	모래사장
폐지			12	2.0	4.0	8.0	시설간연결로	산책4-10 분기점	모래사장
당초			13	2.0	12.0	24.0	시설간연결로	산책4-7 분기점	휴게광장
폐지			13	2.0	12.0	24.0	시설간연결로	산책4-7 분기점	휴게광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당초	산 책 로		14	3.0	6.0	18.0	시설간연결로	산책4-5 분기점	휴게광장
폐지				3.0	6.0	18.0	시설간연결로	산책4-5 분기점	휴게광장
당초			15	0.5	4.0	2.0	시설간연결로	산책4-5 분기점	체력단련시설(1)
폐지				0.5	4.0	2.0	시설간연결로	산책4-5 분기점	체력단련시설(1)
당초			16	0.5	4.5	2.2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1)	체력단련시설(2)
폐지				0.5	4.5	2.2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1)	체력단련시설(2)
당초			17	0.5	5.5	2.7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2)	체력단련시설(3)
폐지				0.5	5.5	2.7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2)	체력단련시설(3)
당초			18	0.5	3.0	1.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3)	체력단련시설(4)
폐지				0.5	3.0	1.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3)	체력단련시설(4)
당초			19	0.5	3.0	1.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4)	체력단련시설(5)
폐지				0.5	3.0	1.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4)	체력단련시설(5)
당초			20	0.5	2.5	1.2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5)	산책4-5 분기점
폐지				0.5	2.5	1.2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5)	산책4-5 분기점
당초			21	4.0	12.0	48.0	진입로	100-87도 분기점	어린이놀이터
폐지				4.0	12.0	48.0	진입로	100-87도 분기점	어린이놀이터
당초			22	2.0	12.0	24.0	산책로	산책4-4 분기점	야외무대
폐지				2.0	12.0	24.0	산책로	산책4-4 분기점	야외무대
당초			23	2.0	10.0	20.0	산책로	산책4-24 분기점	지하주차장입구램프주변
변경				2.0	10.0	20.0	산책로	산책4-24 분기점	지하주차장입구램프주변
당초			24	2.5	25.0	62.5	산책로	문화예술회관 후면출구계단	야외무대 부진입부
변경				2.5	58.0	145.0	산책로	주차장	산책4-23 분기점
당초			25	2.5	35.0	87.5	산책로	산책4-24 분기점	산책4-4 시점
변경				2.5	35.0	87.5	산책로	생활과학문화관	산책4-24 분기점
당초			26	2.0	18.0	36.0	산책로	산책4-25 분기점	야외무대 부진입부
변경				2.5	16.0	40.0	산책로	산책4-25 분기점	산책4-27 분기점
당초			27	3.0	10.0	30.0	진입로	주차장(1)	야외무대
변경				3.5	17.0	59.5	진입로	주차장	생활과학문화관 진입부
당초			28	1.5	12.0	18.0	진입로	휴게광장(우)	육교
변경				1.5	18.0	27.0	진입로	산책4-3 분기점	육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당초		산 책 로	29	1.0	5.0	5.0	진입로	육교	산책4-8 분기점
폐지	1.0			5.0	5.0	진입로	육교	산책4-8 분기점	
신설	30		1.5	33.0	49.5	산책로	174-4도	174-4도	
신설	31		1.5	13.0	19.5	산책로	산책4-30 분기점	174-4도 분기점	
신설	32		1.5	21.0	31.5	산책로	산책4-30 분기점	산책4-31 분기점	
신설	33		1.5	14.0	21.0	산책로	산책4-31 분기점	85-3도 분기점	
신설	34		1.5	28.0	42.0	산책로	산책4-32 분기점	85-3도 분기점	
신설	35		1.5	20.0	30.0	산책로	산책4-34 분기점	주민휴게시설(2) 계단	
신설	36		1.5	60.0	90.0	산책로	산책4-35 분기점	85-3도 분기점	
신설	37		1.5	29.0	43.5	산책로	산책4-35 분기점	85-3도 분기점	
신설	38		1.5	10.0	15.0	산책로	산책4-37 분기점	산책4-36 분기점	
신설	39		1.5	21.0	31.5	산책로	85-3도 분기점	산책4-37 분기점	

◆ 은평구고시 제2005-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61-15호 일대 구산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1. 사 업 명 : 구산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호 SH공사 사장 이철수
3. 사업계획승인 내역 : 조건부 승인
 - 가. 사업위치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산 61-15호 일대
 - 나.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2층, 공동주

택(아파트) 2개동 20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다. 사업면적 : 17,486.00㎡(대지 6,832.00㎡, 공원 10,575.00㎡, 도로 79.00㎡)

라. 건축면적 : 1,366.22㎡

마. 연 면 적 : 16,758.45㎡

4.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2007.12.

5. 사업계획승인일 : 2005.9.

6. 의제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지 위치 : 은평구 구산동 산 61-12호 일대(구산주거환경개선지구)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산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 및 공원조성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강남구 개포동 14-5호 SH공사 사장 이철수

○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소로	3	1	6	국지도로	45	산61-11입	산61-15입	일반도로			면적 : 79.00㎡

- 공원조성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공 원	도시자연공원	은평구 구산동 산61-12호외 3	10,575.00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7.12.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 변경)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
가.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소로	3	1	6	국지도로	45	산61-11입	산61-15입	일반도로			면적 : 79.00㎡

나. 공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공 원	도시자연공원	은평구 구산동 산61-12호외 4	10,575.00	

8. 기 타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주택과(☎ 350-3479)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05-13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5-114 (2005.8.11)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번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5-493(2005.8.18)호로 열람 공고후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하고 동법률제91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 330~1708)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번지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시행</p> <p>다. 사업의규모 : 255m²</p> <p>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5 (연희3동 168-6)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5 실시계획고시일~2006.12.31</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영업권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p> <p>사.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p> <p>아. 기타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330- 17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	수용편입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대	38.55	38.55	주광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1-3 201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대	38.55	38.55	김덕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7-12	-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대	44.47	44.47	옥승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32 현대1차A 102-1101	-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대	44.48	44.48	임경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7 한라A 102-204	-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대	44.47	44.47	박은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50-1	서부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97-95(연희지점)	근저당권설정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대	44.48	44.48	김동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6-13	아현1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설정	

제 2653 호

시

민

2005. 9. 22. (목)

○ 물건조서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지하층 101호	건물	연와조 슬라브	45.80	주택	주광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1-3 201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지하층 102호	건물	연와조 슬라브	45.81	주택	김덕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7-12	-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1층 201호	건물	연와조 슬라브	52.85	주택	옥승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32 현대1차A 102-1101	-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1층 202호	건물	연와조 슬라브	52.86	주택	임경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7 한라A 102-204	-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2층 301호	건물	연와조 슬라브	52.85	주택	박은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50-1	서부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동 397-95(연희지점)	근저당권설정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139 2층 302호	건물	연와조 슬라브	52.86	주택	김동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6-13	아현1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설정	

제 2653 호

시

단

2005. 9. 22. (목)

◆ 서대문구고시 제2005-13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5-114 (2005.8.11.)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대문구 홍제동 339-9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5-492 (2005.8.11.)호로 열람공고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 330-1714)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서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9-9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시행
- 다. 사업 규모 : 227㎡
-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5(연희3동 168-6)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2006.6.30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및 영업권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조서 참조
- 사.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 330-1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	수용면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9-9	대	227	227	김중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4가 60-4	-	-	-	-

○ 물건조서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9-9 제지층 제101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8.73	주택	이상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7 삼각산아이원A 103-802	홍 제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15	근저당권 설 정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9-9 제1층 제101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41.64	주택	변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46 까치마을A 1002-806	홍 제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15	근저당권 설 정	-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9-9 제1층 제102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40.18	주택	김의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27-5	홍 제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15	근저당권 설 정	-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9-9 제2층 제201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27.01	주택	곽새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36 극동그린A 101-803	홍 제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15	근저당권 설 정	-

◆ 양천구고시 제2005-59호

양천구 신월동 산호아파트 사업계획승인

1. 양천구 신월7동 331-109호 필지상의 (주)도일건설(대표이사 : 윤수자)이 시행하는 민영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5년 9월 22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명 : 양천구 신월동 산호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 성 명 : (주)도일건설 대표 윤수자
- 주 소 : 광명시 광명6동 754 제일빌딩 301호

다. 사업시행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7동 331-109호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2,089㎡
- 연 면 적 : 5,243.82㎡
- 용 적 륜 : 194.09%

- 건축면적 : 717.01㎡
 - 건 폐 율 : 34.32%
 - 규 모 : 지하1층, 지상7층(1개동) 40세대 및 부대시설
- 라. 사업시행기간 : 2005.9~2006.5
- 마.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구로구고시 제2005-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구로구 구로동 산1-4~구로동 552-6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860-295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구 로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류	3류	-	6	국지도로	40	구로동 산1-4	구로동 552-65	일반도로	-	-	

나. 관련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구로구고시 제2005-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 지형도면 작성·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24호(2005.7.28)로 도시관리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로 결

정된 고척동 155-2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

시계획시설 : 도로·공원)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구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지형도면 작성·승인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세분류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준치)	소로	2	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80	고척동 172-76	고척동 155-84	◦ 3구역 시행시 정비 개설 ◦ 4구역 시행시 폭12m로 확폭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80	고척동 172-38	고척동 193-14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55	고척동 155-12	고척동 193-14	◦ 노선축소및확폭 ◦ 기점위치 변경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38	고척동 172-13	고척동 172-22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지형도면 작성·승인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시설명	세분류			
신 설	공원	소공원	고척동 172-37번지 일대	720	

3. 관련도서는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860-296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05-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123호(1995.4.28)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42호(1995.6.26)로 지형도면 승인된 우리구 구로동 101번지 외 1필지의 구의회이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서울특별시고시 제963호(1986.12.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

정된 구로동 101-1~63-3간 외 1개 노선의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제30조제5항, 제32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 같은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860-295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구로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구로동 101일대	2,270.5	증)26.3	2,296.8	1995.04.28 (서고시 제123호)	2003년 구로동 63-1에서 63-2 토지분할로 인하여 도시계획선형 변경없이 공부상의 면적이 1.3㎡증가, 선형변경으로 25.0㎡증가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류	13	6	국지도로	25.5	구로동 101-1	구로동 63-3	일반도로	1986.12.30 (서울시고시 제963호)	중점부 선형변경
변경	소로	3류	13	6	국지도로	25.5	구로동 101-1	구로동 6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류	14	6	국지도로	88.7	구로동 102-1	구로동 63-3	일반도로	1986.12.30 (서울시고시 제963호)	중점부 선형변경
변경	소로	3류	14	6	국지도로	88.7	구로동 102-1	구로동 63-3	일반도로		

다. 관련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구로구고시 제2005-75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1. 구로구 오류동 108-37호외 10필지상에 목화연립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전화 : 860-2381)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목화연립재 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08-37외 10필지

○ 대지면적 : 3,176.0㎡

○ 건축규모 : 연면적 8,203.566㎡, 지하 1층 지상5층, 아파트2개동 60세대

다.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 목화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정연술

- 은하수종합건설(주) 대표 김영길

주소 : - 서울 구로구 오류동 108-37외 10필지

- 서울 강동구 길동 384-2

라. 사업시행계획변경내용

1. 건축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비 고
건축면적	1,321.48	1,319.469	-2.011	
지상층 면적	5,874.74	5,866.93	-7.810	
지하층 면적	2,336.636	2,336.636	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비 고
연 면 적	8,211.376	8,203.566	-7.810	
용 적 율	184.97%	184.73%	0.24%	
세 대 수	60	60	0	

2. 세대별면적

평 형	세대수	전용면적		증 감	주거공용		증 감	분양면적		증 감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31(A)	15	84,968	84,954	-0.014	18.099	18.085	-0.014	103.067	103.039	-0.028
31(B)	10	84,925	84,784	-0.141	18.845	18.401	-0.444	103.770	103.185	-0.585
28(A)	5	76,435	77,831	+1.396	17.681	16.507	-1.174	94.116	94.338	+0.222
28(B)	5	76,584	77,829	+1.245	17.103	16.371	-0.732	93.687	94.200	+0.513
28(C)	5	76,582	77,261	+0.679	17.274	16.883	-0.391	93.856	94.144	+0.288
28(D)	5	76,417	76,935	+0.518	17.653	16.778	-0.875	94.070	93.713	-0.357
28(E)	5	76,442	77,162	+0.720	18.657	16.724	-1.933	95.099	93.886	-1.213
28(F)	10	76,754	77,234	+0.480	16.935	16.576	-0.359	93.689	93.810	+0.121
합 계	60	4,803.61	4,829.58	+25.970	1,071.125	1,037.36	-33.765	5,874.74	5,866.93	-7.810

3. 각 평형 내부평면 변경 및 일부벽체 변경
 마.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3.3.~2005.12.
 바. 사업시행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 :
 2003.1.27
 사. 기타 관계도서 : 구로구청 주택과에 비치

◆ 구로구고시 제2005-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
 공지)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1. 구로구 오류동 199-1~190-8구간 도
 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 및

공동 4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 : 공공공지)변경결정 사항에 대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860-
 295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구로구청장

-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폭원(m)								
신설	소로	2류	8	국지도로	31	오류동 199-1	오류동 190-8	일반도로	-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구로구 공동 45번지 일대	10,205	(중) 5,339	15,544	2003.9.25 (구로구고시 제2003-84호)	

다.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금천구고시 제2005-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금 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대지면적
 - 가.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495-1호외43필지
 - 나. 사업면적 : 8,283.8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가. 상 호 : 이랜드독산지역주택조합, (주)이랜드개발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495-1호
4.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07년10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05. 8. .
6. 건축물의 개요 및 용도
 - 가. 건축면적 : 1,202.18㎡
 - 나. 연 면 적 : 28,532.47㎡
 - 다. 건 폐 율 : 14.51%
 - 라. 용 적 율 : 249.08%
 - 마. 건축물의 최고높이 : 72.86m
 - 바.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시설
7. 주택규모 및 건설계획
 - 가. 주택규모 : 공동주택(아파트)5개동, 지

- 하2층/지상15~25층, 아파트세대수 : 187세대 및 부대시설
- 나. 아파트세대계획(전용면적) 84.93㎡ (전용면적) - 140세대, 84.92㎡(전용면적) - 47세대
- 8.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 도로법제34조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등
- 9. 본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금천구청 주택과(☎ 890-23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고시 제2005-5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98호(1978.3.15.)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90.9.27.)로 변경결정된 영등포구 영등포동 576-6호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 2670-36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고등학교	영등포구 신길동 184-3 일대	25,917	감)16	25,901	서고제98호(1978.3.15)	신형변경

※ 변경결정 사유 : 학교용지 중 일부가 개인 토지를 점유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토지 교환.

나. 관련도면 : 생략(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 동작구고시 제2005-6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고시 제242호(1992.8.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동작구고시 제2005-48호(2005.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동작구 신대방1동 644-6~395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 820-9904)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신대방1동 644-6~395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신대방1동 644-6~395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B=4~6m, L=240m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 및 99조의 규정에 의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신대방1동 644-6~395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성 명	
1	395-93	공원	291	291	서울특별시				395
2	459-12	하천	300	300	서울특별시				459-5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성 명	주 소	
3	459-13	하천	64	64	서울특별시					459-5
4	459-15	도로	86	86	서울특별시					459-6
5	459-17	도로	114	114	서울특별시					459-6
6	640-2	학교	45	45	서울특별시 교육감					640
7	640-3	학교	493	493	서울특별시 교육감					640
8	산144-9	공원	15	15	서울특별시					산144-2
9	산144-10	임야	85	85	이광노	동작구 신대방동 639-2	근저당	(주)한솔상호 신용금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9-2(기업금융팀)	산144-3
10	산144-11	임야	25	25	이광노	동작구 신대방동 639-2				산144-4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신대방1동 644-6~395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사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성 명	주 소	
1	631-14	건물	기와벽돌	16	주택	양수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3-6블럭 상암월드컵파 크 6단지 602-901호				기존 무허가
		건물	판넬벽돌	2	화장실						
		대문	철 재	1식	대문						
	643-1	건물	스레트벽돌	24	식당						
2	643-1	건물	스레트벽돌	6	식당	윤영구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1동 623번지				기존 무허가
		담장	벽 돌	1식	담장						
		대문	철 재	1식	대문						
		간판	플라스틱	2개	간판						
		전기 계량기	철 재	1개	전기 계량기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사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성 명	주 소	
3	643-1	건물	슬라브벽돌	2	화장실	조충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5-6번지 동천마을뜨란채 201-1304호				기존 무허가
		대문	철 재	1식	대문						
	459-5	담장	벽 돌	1식	담장						
		건물	스레트벽돌	5	창고						
4	459-5	건물	기외벽돌	16	화장실 주택	유기찬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1동 623번지				기존 무허가
		건물	스레트벽돌	2	주택						
		대문	철 재	1식	대문						
5	459-5	건물	판넬벽돌	7	점포	성명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주공㉠ 329-207호				기존 무허가
		건물	기외벽돌	21	주택						
		대문	철 재	1식	대문						
		대문	샤 시	1식	대문						
		담장	벽 돌	1식	담장						
6	640-4	담장	석축작벽돌 웬 스	1식	담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대문	스 텐	1식	대문						
		수목	.	1식	수목						
7	459-6	건물	포장벽돌	8	주택	이광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39-2	근저당	(주) 한솔상호 신용금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9-2 (기업금융팀)	
		화단	.	1식	화단						
		대문	철 재	3식	대문						
		담장	함 석	1식	담장						
		비닐 하우스	.	1식	개집						
		수목	.	1식	수목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신대방1동 644-6~395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 소	
1	신대방1동 643-1	영업권	순대장터	1식	식 당	홍병철	신대방1동 644-1	기존 무허가
2	신대방1동 643-1	영업권	대호네살비집	1식	식 당	조정옥	신대방1동 644-1	기존 무허가
3	신대방1동 459-6	영업권	형제자전거	1식	자전거판매.수리	조왕도	신대방1동 623번지	기존 무허가

◆ 관악구고시 제2005-72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57(2005.8.19)
호로 서울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협의 및 도시
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건축과(☎ 880-3886)

2) 변경내용

가) 건물(증축)

구 분	건 축 면 적(m ²)			연 면 적(m ²)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의생명공학 연구동	1,590.94	1,649.85	58.91	6,913.68	9,811.22	2,897.54	증축

5.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총장
정운찬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2007.3.31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유권이외의권리
관악구 신림동 산56-1일대 관악구 봉천동 산4-2일대	좌 동	학교용지	소유자: 국(교육인적자원부) 재산관리관 : 서울대학교총장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9월 22일

관 악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
일대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3. 사업의명칭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시설 확충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 3,895,659m²
나. 사업변경 내역
1) 건 물
- 당 초 : 1,033,178.37m²(195동)
- 변 경 : 1,042,989.59m²(195동)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 서초구고시 제2005-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39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같은법률 동조제4항의 고시에 갈음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건축규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신설	사회복지시설	서초동 1360-26	613.3	50% 이하	250% 이하	6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 관계도면 : 생략(서초구청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 비치도면과 같음)

3.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570-6385~7) 및 서초 2동(☎ 570-6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05-667호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33번지 일대를 전농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키 위해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에 대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제7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신규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333번지 일대	150,875.2m ²

2. 정비계획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m ²)	비율(%)	비 고	
합 계		150,875.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4,481.6	29.5	-	
	도 로	18,996.4	12.6	-	
	공 원	6,714.5	4.5	-	
	녹 지	866.7	0.6	-	
	학 교 1	12,000.0	8.0	고등학교	
	학 교 2	904.0	0.6	중학교(경계조정)	
	문화시설	5,000.0	3.2	-	
택 지	소 계	106,393.6	70.5		
	택지1	1-1	31,221.6	20.7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1-2	45,120.4	29.9	
		1-3	27,286.6	18.1	
	택 지 2	2,365.0	1.6	종교시설-1	
택 지 3	400.0	0.2	종교시설-2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도지역) 사항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50,875.2	-	150,875.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29,448.9	감)128,544.9	904.0	0.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426.3	감)2,583.6	18,842.7	12.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31,128.5	131,128.5	86.9	

- 변경결정 사유 :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제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결정구분	구 모				가능	사용형태	연장(m)	위 치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시 점	종 점			
폐지	소로	2	1	7-9	국지도로	일반도로	104	전농동 440-12	전농동 466-38	-	동고시 98호 ('94.4.8)	구역내
폐지	소로	2	398	7-8	국지도로	일반도로	350	전농동 325-87	전농동 222-8	-	건고시 768호 ('63.1.24)	"
폐지	소로	3	1	6-7	국지도로	일반도로	100	전농동 407-43	전농동 457-6	-	건고시 768호 ('63.1.24)	"
폐지	소로	3	424	5-7	국지도로	일반도로	135	전농동 375-14	전농동 343-7	-	서고시 91-347호 ('91.11.30)	"
폐지	소로	3	453	7	국지도로	일반도로	97	전농동 437-11	전농동 426-5	-	서고시 91-347호 ('91.11.30)	"
폐지	소로	3	454	5-6	국지도로	일반도로	67	전농동 333-33	전농동 334-5	-	서고시 91-347호 ('91.11.30)	"
폐지	소로	3	455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07	전농동 343-5	전농동 334-4	-	서고시 91-347호 ('91.11.30)	"
폐지	소로	3	340	6-7	국지도로	일반도로	130	전농동 371-4	전농동 276-21	-	서고시 91-347호 ('91.11.30)	"
폐지	소로	3	435	5-7	국지도로	일반도로	250	전농동 313-5	전농동 409-2	-	건고시 768호 ('63.1.24)	"
폐지	소로	3	40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00	전농동 353-8	전농동 358-25	-	건고시 768호 ('63.1.24)	"

결정 구분	규 모				가 능	사 용 형태	연 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시 점	종 점			
신설	중로	2	203	18	집산도로	일반 도로	60	전농동 325-129	전농동 355-14	-	-	구역내
신설	중로	2	205	18	집산도로	"	37	전농동 315-1	전농동 324-10	-	-	"
신설	중로	2	208	7-18	집산도로	"	283	전농동 325-164	전농동 558-155	-	-	"
기정	대로	3	344	25	보조간선 도로	일반 도로	4,200	답십리동 498-1	면목동 1083-1	전농 로타리	진고시 177호 (62.12.8)	사업구역내 조정 - 폭원 : 28~31m - 연장 : 248m
변경	"	2	"	25	"	"	4,200	답십리동 498-1	면목동 1083-1		-	
기정	대로	3	427	25	보조간선 도로	일반 도로	4,068	전농동 621-1	면목동 1341-10	동대문 중학교	서고시 187호 (78.5.1)	사업구역내 조정 - 폭원 : 31m - 연장 : 120m
변경	"	2	"	25	"	"	4,068	전농동 621-1	면목동 1341-10		-	
기정	소로	1	352	10	국지도로	일반 도로	355	전농동 440-12	전농동 244-6	-	진고시 768호 (63.1.24)	-
변경	중로	2	207	18	집산도로	"	513	전농동 652-12	전농동 244-6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전농1동 452-17일대	1,256.0	감)1,256.0	-	-
신설	공원1	근린공원	전농1동 222-9일대	-	증)2,443.1	2,443.1	-
신설	공원2	근린공원	전농1동 375-5일대	-	증)4,271.4	4,271.4	-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녹지	경관녹지	전농1동 325-132일대	-	증) 866.7	866.7	-

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경후	
신 설	학교	고등학교	전농동 311-7 일대	-	증)12,000	12,000	-
변 경	학교	중학교	전농동 315-5 일대	12,736	증) 904	13,640	-

마)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 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전농1동 325-19 일대	-	증) 5,000.0	5,000.0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규	전농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150,875.2	전농동 333번지일대	1,043	-	-	-	1,043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					
신설	택지1(1-1, 1-2, 1-3)	103,628.6	전농동 333번지일대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0% 이하	84.9m이하 30층이하
신설	택지2	2,365.0	전농동 355-6번지	종교시설-1	관계법규에 의함		
신설	택지3	400.0	답십리동 521-1번지	종교시설-2	관계법규에 의함		
용적률 완화		○ 기본계획용적률 : 190%, 개발가능용적률 240%이하 ○ 공공시설부지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 50%(공공시설부지 확보율 : 20.4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115㎡ 이하 (단, 종전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 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 40%이상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전농동 354-1번지 일대	-	3	34,943.61	123세대	36.44
				285세대	51.00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합 628세대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577~8)
 - 전농제1동사무소(☎ 2171-6102~9)
 - 전농제4동사무소(☎ 2171-6162~6169)
 - 전농제7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2241-9161)

- 번지일대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변경 및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3.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2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동대문구공고 제2005-66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및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공람
-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716호(2005.5.26)로 개발기본계획 승인공고된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기본계획 승인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389호(2001.5.4)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7호(2005.2.5)로 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변경과 전농동 494

2005년 9월 22일
동대문구청장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변경
 - 1) 공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변경
 - 2) 명칭 및 위치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 청량리지역 - 전농구역) 변경
 - 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청량리동 일원
 - 3) 변경취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

본계획 승인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716호, 2005.5.26)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기본계획 승인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4) 주요 변경내용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389호(2001.5.4)로 공고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

5) 세부 변경내용

가) 기본계획상 정비대상범위 및 정비(예정)구역범위

구 분	지 역 명	지정대상범위(㎡)	정비(예정)구역(㎡)	비 고
기 정	청량리 지역	418,000㎡	162,557㎡	청량리구역 72,422㎡ 용두 구역 90,135㎡
변 경	청량리 지역		193,590㎡ (31,033㎡ 포함)	청량리구역 72,422㎡ 용두 구역 90,135㎡ 전농정비예정구역 31,033㎡

※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서울특별시공고 제2005-716호) 승인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
 ※ 청량리구역, 용두구역은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예정임.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지역구분	대상지역	토지이용 유도	지정용도	비 고
기 정	전략재개발지역	청량리역사 뒷편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연계한 주변지역 전략적 개발	업무, 숙박, 문화/집회	지정대상 범위
변 경	"	"	민자역사 건립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전략적 개발	업무, 판매, 문화, 주거	정비예정구역

※ 역세권지역 등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다만, 청량리 균형발전촉진 지구에 포함된 청량리 구역 및 용두구역에 대하여는 추후 변경예정임

- 변경사유 :
- 기본계획상 지정대상범위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
 - 지정용도를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업무, 숙

박, 문화/집회를 업무, 판매, 문화, 주거로 변경하는 내용임.

구분	당 초	변 경
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 •민자역사건립과 관련하여 청량리로타리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며,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진출입구를 확보한다. •제기동사거리에는 고산자로 방향으로 고가차도를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 •민자역사건립과 관련하여 청량리로타리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며, 환승센터의 설치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 및 보행 •이면도로폭 확장으로 보행통행공간을 확보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경우 일방통행을 검토한다(경동시장과 오스카극장 뒷면 이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 및 보행 •이면도로폭 확장으로 보행통행공간을 확보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경우 일방통행을 검토한다(경동시장과 삼성화재 뒷면 이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특별관리지구 지정 검토 •청량리지역을 교통특별관리지구로 설정하여 일관되고 통합된 교통시책을 전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특별관리지구 지정 검토 •좌동

마) 공공시설계획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발구역의 신규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청량리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고가도로 설치계획, 기존 재개발구역(청량리, 용두구역)의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용지 지하부에 설치하여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확보·활용하도록 한다. •공공용지부담율은 도심지역의 재개발 사업시 평균 25%내외이지만 사업지구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큰 점을 감안, 해당지역의 여건과 개발방식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설정한다. 특히 지역정비차원에서 수복개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공공용지 부담비율을 조정한다. •청량리시장 일대의 지역정비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확보 보다는 지구내 연결도로의 확폭을 통한 이면도로의 정비, 공동주차장 확보, 소규모 공원설치 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신규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청량리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고가도로 설치계획, 기존 도시환경정비구역(청량리, 용두구역)의 사업계획 및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용지 지하부에 설치하여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확보·활용하도록 한다. •공공용지부담율은 도심지역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시 평균 25%내외이지만 사업지구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큰 점을 감안, 해당지역의 여건과 개발방식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설정한다. 특히 지역정비차원에서 수복개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공공용지 부담비율을 조정한다. •청량리시장 일대의 지역정비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확보 보다는 지구내 연결도로의 확폭을 통한 이면도로의 정비, 공동주차장 확보, 소규모 공원설치 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2.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가.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 1)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
-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28,679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소 계	변경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28,679	감)28,460	219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28,300	감)28,300	0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379	감)160	219	
상업지역	소 계	0	증)28,460	증)28,460	
	일반상업지역	0	증)28,460	증)28,460	

나)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 지구	일반미관 지 구	동대문구 전농동 649-2~683간	2,340	195	12	서고제164호 (1982.4.22)	배봉로 편측
변경	1	미관 지구	중 심 지 미관지구	동대문구 전농동 649-2~683간	2,340	195	12		
기정	-	미관 지구	일반미관 지 구	동대문구 전농동 680-19~649-2간	2,700	180	15	서고제164호 (1982.4.22)	답십리길 편측
변경	2	미관 지구	중 심 지 미관지구	동대문구 전농동 680-19~649-2간	2,700	180	15		

다)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92	25	보조 간선	1,400	전농동 (산업대학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서고 제743호 (63.12.30)	배봉로
변경	대로	3	92	25~30	보조 간선	1,400	전농동 (시립대학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도시환경정비구역내 B=28~30m, L=195m)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30	25~31	보조 간선	2,100	오스카극장 동측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서고 제187호 ('78.5.1)	답십리길
변경	대로	3	130	25~31	보조 간선	2,100	전농동 621-1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도시환경정비구역내 B=28m, L=180m)
기정	중로	1	382	20	집산 도로	305	전농동 588-176	전농동 588-1	고가 일반	서고 제63호 ('97.3.7)	
변경	중로	1	382	6~23	집산 도로	245	전농동 679-10	전농동 681-3	일반		-폭원 및 선형 조정

라) 광장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광 장	일반광장(근린광장)	동대문구 전농동 493-2 일원	-	중)2,486.1	2,486.1	

마) 녹지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녹 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678-6	186.3		186.3	동대문구고시제125호 (2000.12.30)

바) 공공공지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	동대문구 전농동 680-15 일원	-	중)897.6	897.6	
신설	2	공공공지		동대문구 전농동 678 일원	-	중)204.4	204.4	

사) 시장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시 장 (광문시장)	정기시장	동대문구 전농동 493-2	1,394	감)1,394	0	서고 제160호 (1972.11.2)	

아) 공공청사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동대문구 전농동 678-1	392.7	-	392.7	동대문고시제125호 (2000.12.30)

4) 시행지구분할·건축부지 정비계획 및 건축시설계획에 관한 계획

가) 시행지구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조서

결정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획지계획		용 도	비 고
				번호	면적(㎡)		
총계	-	-	28,679	-	19,054.7	-	
신규	1구역	전농동 679-2번지 일원	27,623.4	-	18,185.4	업무, 판매, 주거, 문화	계획공공시설 : 9,438㎡
신규	2구역	전농동 497-77번지일원	476.6	-	476.6	의료시설	존 치
신규	3구역	전농동 678-1번지일원	579	-	392.7	공공청사, 경관녹지	존 치

나) 건축시설계획 조서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용 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최대용적률)	최고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총계	-	28,679	-	19,054.7	-	-	-	-	-
신규	1구역	27,623.4	-	18,185.4	전농동 679-2일원	업무, 판매, 문화, 주거	10,876.5 (60%)	145,020.8㎡ (800%)	120m
신규	2구역	476.6	-	476.6	전농동 497-77일원	의료시설	285.9 (60%)	1,572.7 (330)	-
신규	3구역	579	-	392.7	전농동 678-1일원	공공청사	235.6 (60%)	981.7 (250%)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간선변(배봉로) : 5m ○ 이면부 : 3m						
비 고			○ 연면적은 지상부 연면적 기준을 제시 ○ 층수의 제한은 하지 않음						

※ 1구역의 용도 중 주거는 주용도(당해 건축시설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가 될 수 없음.
 ※ 2구역(다일천사병원)의 경우 건축법 제5조의2 및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서울시건축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30% 이내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며, 향후 신축 및 개발계획수립시에는 서울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다) 공공용지부담률 산정자료

사업구역	사업시행면적(m ²)	획지면적(m ²)	기존공공용지면적(m ²)	계획공공용지면적(m ²)	부담율(%)
1구역	27,623.4	18,185.4	3,070	9,438.0	25.94
2구역	476.6	476.6	0	0	0
3구역	579	392.7	579	0	0

$$1\text{구역 부담률} = \left(\frac{\text{계획공공용지면적} - \text{기존공공용지면적}}{\text{사업시행면적} - \text{기존공공용지면적}} \right) \times 100 = \left(\frac{9,438 - 3,070}{27,623.4 - 3,070} \right) \times 100 = 25.94\%$$

5) 도시경관과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별첨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5년 이후

7) 입안사유 :

- 본 구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부도심내에 입지하고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전략사업지구로 구분하고 있는 지역임
- 또한, 서울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청량리 균형발전축 진지구 내 입지하고 있는 본대상지는 전농·답십리 뉴타운과 청량리 균형발전축진지구를 연계하는 주요축상에 위치하고 향후 시립대의 연구개발단지와 벤처기능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임
- 현재 미비한 기반시설, 영세한 노후·불량 건축물, 낮은 생활수준 등으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며, 주민의 사업 추진의사가 활발하고, 개발시 주변 개발사업을 촉진·선도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분석되어 청량리 균형발전기본계획상 전략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임.
- 따라서, 부도심 기능의 정립,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청량리 균형발전축진지구기본계획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입안 결정코자 함.

3. 본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 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담당 김제권, ☎ 2127-4292)

우리구 홈페이지 : <http://ddm.go.kr/>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강북구공고 제2005-5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미아1동 703-51번지의 6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을 시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목치

수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열람기간내 열람장소(강북구청 토목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22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미아1동 703-51번지의 6개소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미아1동 703-51번지의 6개소
- 규 모 : 면적 613m²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 서울시고시 제354호

(1990.10.24)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 서울시고시 제89호 (1972.6.30)
-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다.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
-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 토목치수과 (전화 901-6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 업 명 : 미아1동 703-51번지 외 6개소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권 리 자			비 고 (보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1	미아1동 703-51	대	271	80	주경용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2202				
2	미아1동 701-41	대	98	98	주식회사 해민기업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1-3				
3	미아1동 701-40	대	9	9						
4	미아5동 1261-266	대	182	36	정화웅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1-266				
5	수유5동 442-97	대	64	64	김석우	서울 강북구 수유동 553-61 극동④ 2-1303				
6	수유5동 445-49	대	60	60						
7	수유6동 532-24	대	266	266	이인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1-266				

◆ 노원구공고 제2005-4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88호(2004.11.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5-31호(2005.5.19)로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노원구 월계동 322-8~333-2간 도로개설(확장)공사』가 공사완료 되었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청 토목과(950-40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05년 9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 가. 사 업 명 : 월계동 322-8~333-2간 도로개설(확장)공사
- 나.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20m → 28.5m, 연장 91m
- 다. 사업시행자
 - 성 명 : (주) 신세계 대표 이 경상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52-5
- 라. 사업기간 : 2005.5.19~2005.8.31까지
- 마. 시행방법 :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 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	비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녹변동 85-1~118-82간 도로개설사업	녹변동 170-2	38㎡	인가일로부터 2006.12.30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매수청구 토지 보상

-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은평구 녹변동 84번지
 - 2)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번·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 은평구공고 제2005-5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10.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9호(1991.10.8)로 지적승인된 “녹변동 85의1~118의82간”도시계획시설(도로)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률 제9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시보 및 구보에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고일로 부터 20일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된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 명세
 - 붙임 조서 참조
- 라.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조서 참조

마.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 의함
 바.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

사.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아. 기타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토목과(02-350-3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녹번동 85의1~118의82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 류	
1	녹번동	170-2	대	287	도로	38	1	은평구 녹번동 170-2	박한순	중구 화현동 1가 203	우리은행 종로3가점	근저당권 설정	

사업소공고

◆ 중랑소방서공고 제2005-8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중랑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	상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중랑 2005-3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주식회사 동현방재시스템	김춘식 (680709-1#####)	서울시 중랑구 중화3동 310-8 2층	2005.9.15

◆ 양천소방서공고 제2005-1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양천소방서장

- 등록번호 : 제양천2005-9호
- 업종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상호 : (주)한국이에프티엔지니어링
- 대표자 : 박동규(531102-1*****)
하성철(550310-1*****)
- 법인번호 : 110111-1832850

-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54
신트리테크노타운 803
- 등록일자 : 2005. 9.15.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2653-6276)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5-47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송파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 (등급 및 분야)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울송파 2005-2호	소방시설관리업	동방전자산업 주식회사	장성필 (600110-*****)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147-7	2005.9.14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번지
 - 성 명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61번지
 - 면 적 : 2.3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보행계단 설치
 - 개 요 : 보행계단설치 1개소 : B=2.0m, L=28.2m
5. 점용(공사)기간 : 영구(착수일로부터 2개월)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4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2동 726-78번지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4-7번지등 13필지
- 면 적 : - 당초 : 14,637㎡,
- 변경 : 15,17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자전거도로 설치
 - 개 요 :
- 당초 : B=4.0m, L=2.7km
- 변경 : B=4.0m, L=2.7km, 도로경계석 (100×100×1000) : L=5.4km
5. 점용(공사)기간 : 영구(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 성 명 : 중랑구청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403-3번지
 - 면 적 : 19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재해대책창고 설치
 - 개 요 : 재해대책 창고 : 1동 (24.7m × 7.0m × H8.7m)
5. 점용(공사)기간 : 2005.9.7~2010.9.6 (허가일로부터 30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05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p> <p>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p> <p>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 ○ 성 명 : 서울대학교총장</p> <p>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672-14번지 ○ 면 적 : 0.34㎡</p> <p>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위관측시설 설치 ○ 개 요 : 실시간 수위관측시설 1개소 (680mm×440mm×1700mm)</p> <p>5. 점용(공사)기간 : 2010.9.6까지(허가일로 부터 30일)</p> <p>◆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5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p> <p>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p> <p>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번지 ○ 성 명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장</p> <p>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167-42번지의외20필지(벽산빌라앞)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60번지의외 3필지(반포대교 북단)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70-4번지의외 3필지(원효로) ○ 면 적 : - 당초면적 : 3,350㎡</p>	<p style="text-align: right;">- 변경면적 : 3,650㎡</p> <p>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강변북로 구조개선 및 연결도로 개설 ○ 개 요 - 영구시설물 • 청암동 : 교량1개소(켄틸레버식) L=280m • 서빙고동 : 교량1개소(진입로개선) L=66m • 이촌동 : 교량1개소(강상관형교) L=158m - 임시가시설물 : 자재적치장, 오탁방지막, 가교2개소</p> <p>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2006.10.31까지)</p> <p>◆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5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p> <p>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p> <p>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726번지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장</p> <p>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7-140번지의외 29필지 ○ 면 적 : 5,332㎡</p> <p>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사장비 진입로 설치 ○ 개 요 : 공사장비 집입로 1식</p> <p>5. 점용(공사)기간 : 2006.12.31까지(점용기간과 동일)</p>
---	---